

재난의 감정정치와 추모의 사회학*

— 감정의 의료화를 넘어 사회적 치유로 —

김명희**

목 차

1. 들어가며
2. 감정의 의료화와 재난의 감정정치
3. 추모의 사회적 의미와 사회적 치유에의 함의
4. 결론 및 제언

| 국문초록 |

이 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정치문화의 중심부로 부상한 추모(追慕) 현상에 대한 사회이론적 성찰을 사회적 치유의 방법론과 접목하기 위한 시론적 시도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시민들의 추모 감정이 의료화의 자원으로 동원되는 재난 정치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추모 현상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 방식을 모색한다. 최근 감정의 인지적·가치평가적·사회적 구성성을 승인하는 비환원주의적 관점의 감정이론은 추모라는 사회적 현상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찰할 이론적 자원을 제공한다. 이들 이론을 경유해 이 글은 우리 시대의 추모가 지닌 사회학적 의미를 세 차원에서 밝힌다. 첫째, 사회적 참사의 추모는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이자 상징적 배상의 차원을 지닌다. 둘째, 사회적 참사의 추모는 기억과 애도, 그리고 진실의 소통을 통해 손상된 사회관계와 역량을 회복하는 치유의 과정이다. 셋째, 사회적 참사의 추모는 사회적 기념과 의례적 실천을 통해 참사를 야기한 과거의 사회를 반성하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연대감을 창출하는 사회적 치유의 실천적 방법이 될 수 있다.

주제어 : 재난의 감정정치, 감정의 의료화, 감정의 사회화, 사회적 치유, 추모의 사회학

*이 글은 2019년 4월 24일 <추모(追慕), 기억과 성찰의 길>을 주제로 사회적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가 개최한 제2회 사회적 참사 피해자 지원포럼에서 기조 발제한 내용을 학술 논문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논문의 초고를 읽고 생산적 논평을 해주신 건국대 김종곤 선생님과 익명의 심사자 선생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2A03927743).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조교수.

1. 들어가며

오늘날 한국사회는 유례없는 동시대적 추모의 물결을 목도하고 있다. 지난 4월 16일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세월호 5주기 추모행사가 열렸고,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생일 모임을 소재로 한 영화 <생일>이 개봉하여 20일이 지나기도 전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¹⁾ 2015년부터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의 노력 끝에 2019년 4·16생명안전공원의 부지가 안산시 화랑유원지로 확정되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계획에 착수했다. 안산시는 4월 16일을 시 차원의 기념일로 지정하였고, 이와 관련해 안산 시민들의 발의로 제정된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는 “‘4·16 정산’이란 4·16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생명과 안전, 인권과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라고 규정하고 있다.²⁾ 비단 안산만이 아니라 서울과 경기, 광주 지역에 이어 최근 인천시에서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피해자를 돕는 조례안이 발의되기에 이르렀다.³⁾

현대 한국의 정치문화를 가로지르는 ‘추모의 물결’과 ‘추모의 지역화’ 현상은 비단 세월호 참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2014년 정부는 4월 3일을 국가 기념일인 ‘4·3희생자 추념일’로 지정했고 2018년 70주년 4·3희생자추념식에서 대통령이 낭독한 “제주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라는 추도사는 전국민의 마음을 파고들며 4·3전국화의 분수령을 이룬 기념비적 순간으로 회자된다. 또한 2018년부터 8월 14일이 ‘위안부’ 기념일로 공식 지정되었고 2019

1) 김수정, 「『생일』, 100만 돌파... 4월 개봉작 중 유일, 노컷뉴스, 2019. 4.22.

<https://www.nocutnews.co.kr/news/5138522>

2) 416세월호참사작가기록단, 『그날이 우리의 창을 두드렸다. 세월호의 시간을 건너는 가족들의 육성기록』, 창비, 2019, 214-215쪽. 강조는 필자.

3) 정양지, 「인천시의회, 세월호참사 추모 조례안 마련」, 인천투데이, 2019. 8.14.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044>

년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이 개봉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전개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운동이 보여주듯, 동시대적 과거극복의 흐름 속에서 아래로부터 전개되는 추모의 정치는 정부가 주도하던 하향식 추모 절차에서 벗어나 자기성찰의 모습으로 과거를 대면하는 새로운 사회적 공간들을 만들고 있다.

이 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현대 한국사회의 정치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로 부상한 추모 현상의 사회(학)적 의미와 바람직한 방향성을 사회적 치유의 관점에서 탐색하기 위한 시론적 시도다.⁴⁾ 헤아려보면 이미 오래 전부터 한국 현대사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에 대한 기억과 애도, 추모의 문화는 대중들의 감정적 삶을 구성하는 일부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조명은 거의 없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극히 개인적인 영역에 머물거나 기껏해야 소수 지도자/영웅들에 대한 국가적 기념사업 또는 민중운동의 전유물에 불과했던 추모의례가 한국사회의 문화적 문법으로 대중화된 것은 분명 세월호 참사 이후의 일이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비로소 우리사회는 사회적인 죽음을 다룰 때 제기되는 여러 윤리적이고 사회·정치적인 질문들과 대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사회적 추모⁵⁾에 대한 연구는 정치문화 연구의 일부이며, 곧 사회적 치유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이자 사회변동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세월호 이후 추모의 문법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선 세월호 참사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4) ‘사회적 치유’는 국가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과 같이 개인적이고 의학적 차원으로 환원되지 않는 사회적 원인과 과정에 의해 야기된 고통과 트라우마의 해법을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차원에서 모색하는 치유의 통합적 패러다임을 지칭한다.

5) 이 글에서는 개별적 추모의 범위를 벗어나 좀 더 광범위하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추모를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회적 추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간 세월호 참사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고 세월호 참사를 한국사회의 여러 재난안전 사고와 비교해 공통된 함의와 개선 방안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전개된 바 있다. 이는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안전 사회 건설이라는 보편적인 시대적 과제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⁶⁾

그에 비해 ‘범죄형 사회 재난 혹은 보다 엄밀히 말해 ‘국가범죄형 사회재난으로서 세월호 참사의 특수성에 착목해 비교의 함의를 추출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져왔다. 여기서 ‘국가범죄’란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중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다 넓게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 정부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해악을 총칭하는 개념이다.⁷⁾ 2014년 4월 16일 참사의 발생 국면에서 국가의 구조 방기 내지 부작위로 인한 구조 실패, 그리고 이후 진실 규명 작업에 대한 정부의 조직적 방해는 세월호 참사를 국가범죄형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기에 충분하다.⁸⁾ 하지만 정작 각 분야에서 시행되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사업과 안전 관련 제도 정비, 그리고 전문가들의 치유 담론에서 국가 범죄형 재난으로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인식과 성찰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세월호 참사 직후 사건에 대한 해석을 주도했던 ‘사고-보상-의료적 치료’의 프레임과 ‘사건-진실-사회적 치유’의 프레임이 여전히

6) 416세월호참사작가기록단, 『재난을 묻다: 반복된 참사 꺼내온 기억, 대한민국 재난연대기』, 서해문집, 2017; 유해정, 「재난정치와 애도: 남영호, 상품백화점, 세월호 참사의 마주함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황필규, 「재난과 피해자 인권」, 2019년 제1회 사회적 참사 피해지원 포럼 자료집,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19.

7) 이재승, 「인권의 시각에서 본 세월호 사건」, 김명희·김왕배 편,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 그린비, 2016, 338~339쪽.

8) 김종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본 헌법학의 과제」, 『저스티스』 146(3), 한국법학원, 2015; 김명희·김왕배 편,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 그린비, 2016; 이재승, 위의 글; 이호영,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박근혜 정부의 방해」, 『민주법학』 6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7.

팽팽하게 대결하고 있는 재난정치의 경합 국면을 드러내 보여준다. 이제 살펴볼까지만, 각각의 프레임은 세월호 참사 이후 두 형태의 감정정치를 과생하는 바, 감정의 의료화를 매개로 한 ‘치료요법 정치’와 감정의 사회화/역사회를 매개로 추동되는 ‘추모의 정치’가 그것이다. 각각은 ‘추모’현상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분명한 단차를 보여준다.

이 글은 세월호 참사 이후의 국면에서 작동하는 두 형태의 감정정치에 주목해 피해자에게 ‘추모(追慕)’란 무엇이며, 그것이 갖는 사회(학)적 의미와 가능성은 무엇인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는 최근 환원주의적 감정이론에 기반한 재난 피해자의 치유 담론이 감정의 의료화와 접목되는 경향성을 재난의 감정정치의 한 형태로 규정한다. 그리고 마사 누스바움(M. C. Nussbaum) 등이 제시한 비환원주의적 감정이론과 감정의 사회성/역사회 테제를 경유해 추모 현상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 방식을 모색한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필자가 최근 몇 년간 분석한 여러 역사적인 추모사례를 참고해 - 일본군 ‘위안부’, 거창·산청·함양 사건, 5·18 민주화운동, 4·16 세월호 참사 등 - 사회적 참사의 추모가 지닌 의미를 세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궁극적으로 현대 한국의 핵심적인 정치문화로 부상한 사회적 추모 현상을 새로운 학문적 주제로 정립하고 사회적 치유의 방법론과 접목하려는 이 글의 시도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고통과 상(喪)의 과정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향후 지속 가능하고 보다 민주적인 추모문화의 모색을 위해서도 유의미한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감정의 의료화와 재난의 감정정치

2.1 감정의 의료화와 치료요법 정치

현대사회의 전문화와 기술화, 그리고 의료화 경향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감정주의의 부상을 헝가리 사회학자 프랭크 푸레디(F. Furedi)는 ‘치료요법 문화’로 개념화한다. 치료요법문화는 ‘감정주의로의 전환을 수반하면서 감정에 권위를 부여하고 감정 프리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특징을 지닌다. 즉 감정은 치료요법문화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는 그간 사회 인식에서 무시되어온 감정을 문화적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기획이 아닌데, 치료요법문화의 관심이 ‘감정’ 그 자체보다는 ‘감정적 결함’에 있는 까닭이다. 치료요법적 세계관에 따르면, 개인과 사회가 고통을 받는 것은 감정적 결함 때문이다. 이러한 감정결정론은 현대사회가 직면한 문제 중 많은 것이 감정 상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게 한다. 그 결과 처리되거나 관리되지 않은 감정은 사회를 괴롭히는 질병의 원인으로 간주됨으로서 ‘병리화’되고 곧 치료요법의 대상이 된다.⁹⁾ 요컨대 치료요법 문화는 시민들의 감정적 삶이 의료의 대상으로 편입되는 감정의 의료화 현상과 긴밀하게 결합되는 특징을 보인다.

푸레디는 이러한 치료요법적 사유방식 혹은 치료요법 정치의 특징을 감정정치¹⁰⁾로 규정하고 영미사회의 도처에서 사례를 찾아낸다. 이를테면 정치인들은 특정한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는가’로 평가받는다. 9·11 직후 미국 공중들이 조지 부시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본 후

9) 푸레디(F. Furedi), 『치료요법문화』, 박형신·박형진 옮김, 한울아카데미, 2016, 7~8쪽.

10) 감정정치는 감정을 주요한 자원으로 동원하는 정치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푸레디에 따르면 감정정치의 특징은 감정이 미치는 공적 영향을 자의적으로 규정하는데 있다. 푸레디(F. Furedi), 위의 책, 411쪽.

그에게 지지를 보냈듯, 정치인들은 대의와 신념보다는 감정표출을 통해 유권자에게 호소한다. 결국 치료요법 문화에서 감정은 문화적 숭배의 대상이자 의료화의 대상이 된다. 이 같은 치료요법 정치는 몹시 개인화된 감정주의와 소외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사회정치적 비참여와 함께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¹¹⁾

치료요법정치는 애도와 비애, 그리고 추모의 양식에도 적용된다. 산 자와 죽은 자를 분리하는 근대의 의료체계는 비애가 진단과 처방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의료모델을 통해 슬픔의 감정을 치유의 대상으로 삼았다. 비애에 대한 의료적 모델은 비애를 비정상적인 ‘문제적 징후’로 간주하고 치유의 명분을 내세워 의료진과 상담전문가 등이 간여할 것을 강조한다. 비애에 젖은 사람을 치유와 돌봄을 받아야 할 환자로 규정하는 것이다.¹²⁾ 전문가들이 개입해도 ‘비애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그 개입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경험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의료모델은 슬픔의 해결을 위해 전문가 상담을 하거나 치료제를 복용하게 한다. 간단히 말해 기업의 시장원리와 친화적인 관계를 맺는 의료모델은 비애를 집단적 책임이나 구조적 원인보다 개인의 책임 혹은 개인적 사유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비애를 의료화한다.¹³⁾

이러한 의료화 경향 속에서 재난을 둘러싼 추모의례조차 치료요법문화의 일부로 편입된다. 9·1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월호 참사가 남긴 고통과 상처는 빈번히 그것들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묘사된다.

11) 푸레디(F. Furedi), 위의 책, 72쪽과 101~102쪽.

12) Stroebe, Margaret, 1997, “From Mourning and Melancholia to Bereavement and Biography: An Assessment of Walter’s New Model of Grief”, *Mortality* 2(3), pp.255~262.

13) 김왕배, 『감정과 사회: 감정의 렌즈를 통해 본 한국사회』, 한울아카데미, 2019, 213~214쪽.

슬픔과 사별은 모든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감정이며, 훈련된 전문가들이 치료할 수 있다는 담론을 미디어와 전문 출판가들은 되풀이했다. 9·11 이후 집단적 슬픔을 동원하여 추모 행사를 열라는 권고는 추모를 통해 공동체의 목적을 확인하고자 했던 전통적인 방식과 매우 달랐다. 그곳에서 추모 과정은 “폭과의 영향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입은 공동체를 돕기 위해 치료요법적이 되도록” 의식적으로 설계되었다.¹⁴⁾ 이제 사별은 죽은 자들에 대한 추억 행동이 아니라 생존자들에 대한 치료요법적 진술이 되며, 이와 같은 치료요법적 추도는 정신의학적 용어들로 표현되는 특징을 보였다.¹⁵⁾

마찬가지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집단 트라우마와 상실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서 추모현상을 다루거나,¹⁶⁾ 청소년들의 ‘간접 외상’을 치유하는데 추모활동이 지닌 치유적 효과와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에 주목한 최근 연구들¹⁷⁾은 치료요법정치와 추모 담론이 상호 접목되고 있는 한국적 맥락을 조심스럽게 드러내 보여준다. 물론 이들 연구의 최종 관심이 비단 세월호 추모 현상을 집단트라우마의 연장선에서 다루는데 멈추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건과 현상을 진단하는 개념 자체가 의료 중심의 지식체계에 머물러 있는 까닭에 추모의 참여자들을 정치적인 시민이 아니라 잠재적인 트라우마의 희생자로 배치하는 기존 전문가들의 치유 담론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¹⁸⁾

14) Linenthal, Edward. T., *The Unfinished Bombing: Oklahoma City in American Mem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4.

15) 푸레디(F. Furedi), 같은 책, 39~40쪽.

16) 문희정·주혜선·이수상·안현의, 「집단 트라우마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상실 이후의 추모 반응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13(11),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7.

17) 한효정·김민·남상인, 「세월호 참사 추모활동 대학생의 의도적 반추, 자기노출, 추모활동이 간접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6), 한국청소년학회, 2017.

18) 사족을 달자면, 의료적 치료와 사회적 치유는 상호 배타적이고 이분법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 있는 층위 관계로 통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마땅할 것이다. 이 점에서

2.2 감정의 사회화와 역사화: 환원주의를 넘어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치료요법정치와 재난감정의 의료화를 추동하는 지식체계가 감정을 인간의 심리생리학적 토대로 환원하는 환원주의적 감정 이론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원주의적 감정이론의 한계를 비판하며 보다 통합적인 관점을 모색해 온 사회이론가들의 작업이 의미를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먼저 법철학자이자 정치철학자이며 윤리학자이기도 한 시카고대학의 석좌교수 마사 누스바움(M. C. Nussbaum)은 최근 심리학에서 영향을 떨치고 있는 환원주의적 프로그램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감정 이론가들의 한 편은 - 진화심리학, 일부 인지심리학, 정신분석학자들과 같이 - 사회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며 감정적 삶을 가장 핵심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 공통된 특징이 있다. 반대로 인류학자들은 마치 한 사회의 감정적 레파토리가 속속들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듯, 말하자면 생물학이나 삶의 공통된 상황에 의해 구속되는 제한이 거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접근의 한계는 감정적 삶의 공통성에 대한 관심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⁹⁾

첫 번째 감정이론이 인간의 감정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적 심리나 생

사회적 치유의 방법론은 사회과학적 설명과 사회이론적 비판, 인간의 고통을 다루는 응용과학의 실천들과 윤리적 개입의 두터운 결합을 추구한다. 김명희, 『통합적 인간과학의 가능성: 맑스와 뒤르케임의 실재론적 귀환』, 한울아카데미, 2017, 529~532쪽.

- 19) 누스바움(M. C. Nussbaum), 『감정의 격동1: 인정과 욕망』, 조형준 옮김, 새물결, 2015, 269~271쪽. 같은 맥락에서 데보라 럽턴(D. Lupton)은 학술문헌들이 감정(emotion), 느낌(feeling), 기분(mood), 감각(sensation) 등을 더욱 자세히 정의 내리려고 하지만 실상은 그 범주 간의 회색지대를 인지하지 못한 채 조야한 환원주의에 빠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도들은 추상적이고 개념적으로 유형화된 감정들이 실제로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획득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 럽턴(D. Lupton), 『감정적 자아: 나의 감정은 사회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박형신 옮김, 한울아카데미, 2016, 14~15쪽.

리학적 토대로 붕괴시키는 심리학적·생물학적 환원주의의 한계를 보여준다면, 감정의 사회적 구성성을 내세워 문화적 차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두 번째 접근을 문화 환원주의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접근은 감정을 비인지적이고 비지향적인 느낌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오류를 공유한다. 그리고 감정과 믿음, 감정과 인지 사이에 뚜렷한 이분법을 설정하는 환원주의적 감정이론의 오류는 인간주의적 감정이론 또한 공유하는 쌍둥이 함정이라 할 것이다.²⁰⁾

이와 달리 누스바움은 감정을 생리적 수준의 동요를 반영하는 감각이나 단순한 느낌(feeling)과 구분하면서, 대상에 대한 평가(evaluation)와 판단을 수반하는 것으로 (재)정의한다. 그녀에 따르면 감정은 크게 네 가지 속성을 갖는다. 첫째, 감정은 어떤 것에 관한 감정이다. 즉 감정은 대상을 갖는다. 둘째, 이때 감정이 갖는 대상은 바로 지향적 대상이다. 감정 주체가 지각하는 그 대상은 주체에 의해 해석된 대상이다. 셋째, 감정은 대상에 관한 특정한 믿음(belief)을 구현한다.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고 두려움에 몸을 떨다면 이때의 떨림은 그 대상이 위험하다는 믿음인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넷째, 감정을 특징짓는 지향적 지각들과 믿음들은 어떤 가치와 관련된다. 즉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그 대상에 어떤 '내적 가치'나 '중요성'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감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적 대상이 나의 행복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판단'에서 비롯되며, 그 판단은 '가치평가(evaluation)'를 포함하는 것이다.²¹⁾ 요컨대 누스바움의 견해를 간단히 요약하면, 감정은 인지적 믿음과 판단에 의존하는 가치평가적 사유형태라는 것이다.

이 같은 인지적/가치평가적 감정철학의 커다란 강점은 사회와 개인이 어

20) 누스바움(M. C. Nussbaum), 위의 책, 227쪽.

21) 누스바움(M. C. Nussbaum), 같은 책, 71~78쪽.

디를 개선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다는 점을 적절히 환기시키는데 있다. 만약 감정이 가치평가의 요소를 지닌다면, 이는 곧 감정이 평가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²²⁾ 그렇다면 감정의 인지적/도덕적 속성을 인정하는 관점은 개인과 사회의 해방의 가능성을 사실상 확대하는 바, 이를 이해하기 위해 인간의 감정과 동물의 욕구에 대한 그녀의 비교를 잠시 경청해보자.

누스바움에 따르면 욕구는 대상에 고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치에 무관심하다. 반대로 감정은 대상의 가치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을 포함한다. 그것은 자체에 내재적이다. 또한 감정은 - 두려움, 슬픔, 사랑, 분노 같이 - 대상의 유형에 대해 매우 유연하다. 우리는 사람 또는 대상을 사랑할 수 있으며, 동물이나 아이에 대해 슬퍼할 수 있다. 즉 감정에 핵심적인 것이 대상에 투여되는 가치인 까닭에, 감정은 가치평가적이며 - 어쨌든 어느 정도 대상에 대해 - 유연하다. 거꾸로 감정이 가치평가적이며 유연하다는 것은 감정이 믿음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스바움은 이를 ‘감정의 사회적 가변성’이라 부른다. 이를테면 육체적 욕구는 주변에 정확한 종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전형적으로 굶주림은 먹이가 존재하지 않아도 지속되는 가치 독립적인 충동이다. 하지만 육체적 욕구와 달리 감정은 대상 및 가치와 관련된 믿음이 바뀌면 사라진다.²³⁾

요컨대 특정한 형태의 감정의 기저에 있는 인지적 믿음의 내용이 수정된다면 특정한 형태의 감정 또한 서서히 수정될 수 있다. 이 같은 견해는 이미 정해져 있는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목표 자체에 대한 성찰과 숙고를 허용한다. 즉 감정에 대한 인지적/가치평가적 개념은 사회가 어떻게 분노, 질투 그리고 두려움의 몇몇 유해한 형태를 제거

22) 누스바움(M. C. Nussbaum), 같은 책, 318쪽.

23) 누스바움(M. C. Nussbaum), 같은 책, 246~269쪽.

할 수 있는지, 나아가 사회적 규범의 변화가 어떻게 감정적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준다.²⁴⁾

이 관점은 감정에 대한 흄적 모델의 상당한 수정을 함축하면서 비판적 실재론이 인간과학의 가능성으로 제시한 설명적 비판(explanatory critique)²⁵⁾ 이론과 결합될 수 있다고 보인다. 콜리어(A. Collier)가 간결하게 이해한 바 있듯, 설명적 비판은 설명에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통해 비판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비판적 실재론의 목적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인지적 현실에 내재한 거짓(또는 부적합한) 관념과 믿음들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지식을 통한 인간 해방의 가능성을 확장하는데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콜리어는 인간의 감정에 대한 설명적 비판의 가능성을 제시한 사례로 스피노자의 윤리학을 들고 있다.²⁶⁾

예컨대 스피노자에 따르면 우리가 적절한 관념에 기초를 둔 합리적 정서를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자유롭다. 즉 감정은 인지적 본질을 지니며, 감정이나 믿음의 대상이 그 감정이나 믿음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질 때 순서에 따라 교정(rectification)이 등장한다. 말하자면 “우리가 슬픔의 원인을 인식하는 한에서 슬픔은 수동이기를 멈춘다. 즉 그러한 한에서 슬픔이기를 멈춘다”는 것이다.²⁷⁾ 그러므로 우리는 보다 적합한 관념을 가짐으로써

24) 누스바움(M. C. Nussbaum), 같은 책, 269쪽.

25) 흄(D. Hume)의 사실/가치 이분법에 대한 논박으로서 설명적 비판은 사회세계는 사회적 객체들과 아울러 사회적 객체들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들로 구성되며 따라서 사회세계를 탐구해서 설명하는 연구는 그 자체로 비판을 내포하고 가치와 행위에 대한 판단을 수반한다는 주장이다. 사실은 가치를 함축할 수 없다는 비자연주의적 교의를 함락한다면, 설명적 비판의 가능성은 실천 이성 일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것이 인간과학에서 자연주의 윤리학의 기획이 새롭게 출발하는 지점이다. 김명희, 같은 책, 501~508쪽과 550쪽. 누스바움이 말하듯 윤리적, 사회적/정치적 피조물에게 감정 자체는 사회적/정치적이며 윤리적 숙고의 일부다. 누스바움(M. C. Nussbaum), 위의 책, 279쪽과 317쪽.

26) 콜리어(A. Collier), 『비판적 실재론: 로이 바스카의 과학철학』, 이기홍·최대용 옮김, 후마니타스, 2010, 263~267쪽.

행동력을 증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아의 이해력과 그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개인적 해방의 작업은 한 개인의 정서를 그 정서에 대한 설명적 비판을 통해 변형하는 작업이다. 감정의 원인과 본질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평가를 바꾸고 감정에 대한 인지적 이해를 확장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해방의 가능성이 확장되는 것이다.²⁸⁾ 이처럼 감정이 인지적 믿음에 의존하는 가치평가적 사유형태이며 – 따라서 – 사회적인 속성을 지닌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제 쟁점은 감정의 원인과 대상은 무엇이며 그 대상에 대한 인식과 판단은 어떤 믿음과 감정을 창출하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의 정동을 유발하고 있는가가 된다.

한편 감정의 인지적·가치평가적·사회적 구성성을 승인하는 관점은 최근 제안된 ‘공감장(共感場)’ 개념과도 공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개념의 제안자들은 심리학주의 또는 생물학주의에 침윤된 감정론을 비판하며 역사성과 사회성의 계기를 갖는 감정을 감성(感性, emotion)이라 칭한다. 즉 감정은 언제나 사회적이며 그래서 공감이다. 또한 감정은 의식 또는 무의식의 층위에서 일어나는 신체들의 마주침과 변용을 아우르지만 언제나 그 자체로 관계적이며 지향적이다. 이들은 공감장이라는 개념을 통해 공통의 역사적 기억에 기초한 공감 현상들이 갖는 역사성, 사회성, 정치성과 문화성의 메커니즘을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²⁹⁾

나아가 감정이 내면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적 산물이라는 감정의 사회성 테제는 최근 역사학과 정치학 분야에서 제기된 ‘감정의 역사화’ 테제를 통

27) 스피노자(B. Spinoza). 『에티카』, 강영계 옮김, 서광사, 1990, 305쪽.

28) Evenden, Martin, “Critical Realism in the Personal Domain: Spinoza and Explanatory Critique of the Emotions”, *Journal of Critical Realism* 11(2), 2012, pp.175~178.

29) 전남대학교 감성인문학연구원, 『공감장이란 무엇인가: 감성인문학 서론』, 길, 2017, 11~21쪽.

해 방법론적으로 더욱 구체화될 수 있다. 감정의 역사화란 감정을 특정 사회구조의 단순한 반영물로 이해하거나 인간 내면의 신경학적 작용으로 환원하지 않고 특정한 감정의 발화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적 구조, 나아가 특정한 감정의 발화나 실천이 억제되거나 변이되는 역사적 회로를 추적하는 감정 연구의 방법론을 뜻한다.³⁰⁾ 이상 감정에 대한 비환원주의적 관점에서 제출된 사회이론은 ‘전체로서의 인간의 특정 층위에 감정을 가두지 않으면서, 역사적으로 구성된 어떤 실천의 구조가 해당 감정을 가능케 하였는가를 해명하도록 우리를 안내한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추모’ 또한 정서적 요소와 함께 인지적·도덕적 요소가 함께 작동하는 집합감정이라 할 수 있다. 헤아려보면 추모의 감정에는 1) 고인의 죽음이 자아와 사회에 관련된 의미가 있으며 2) 고인의 삶이 지속적으로 기억되고 기념될 가치가 있으며 3) 고인의 죽음에 나 자신이 직접·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고 책임이 있다는 인식과 평가가 담겨 있다. 동시에 추모는 슬픔과 비애, 존중과 그리움,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속죄 등의 감정(군)을 수반하지만, 감정으로 환원되지 않는 실천적 차원과 수행성을 지닌다. 즉 추모는 다른 감정과 사뭇 달리 집합적이고 주기적인 ‘의례’를 통해 발화되고 수행되는 사회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 몇 가지 검토를 거쳐 후술하겠지만 – 뒤르케임의 감정이론은 ‘추모’라는 감정이 지닌 인지적·도덕적·사회적 차원 뿐 아니라 – 누스바움의 감정이론이 미처 다루지 못한 – 수행적·실천적 차원을 포착할 유력한 사회학적 설명 모델을 제공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추모라는 집합감이 발화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실천의 맥락을 살펴보기로 하자.

30) 대표적으로 윌리엄 레디(W. Reddy)의 감정 발화 개념에 기초한 감정의 역사방법론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민수·오경환, 「감정과 정동 사이: 감정의 역사화를 위한 방법론적 시론」, 『역사와 경계』 111, 부산경남사학회, 2019, 9~19쪽.

3. 추모의 사회적 의미와 사회적 치유에의 함의

3.1 추모: 기억, 애도, 성찰의 과정

사전적 의미에서 추모(追慕)는 ‘죽은 사람을 그리며 생각함’이라는 뜻으로,³¹⁾ 고인(故人)에 대한 남은 자의 기억과 애도 과정을 지칭한다. 즉 추모(commemoration)는 사람이나 사물의 기억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며 애도를 통해 슬픔을 넘어 현재를 살아내고 미래의 삶을 향하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고인의 죽음이 비극적인 사회적 참사와 연루된 사회적 죽음인 경우, 추모는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기억과 애도만이 아니라 비극적 사건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다양한 형식의 기념과 의례, 후대에 대한 교육 등을 수반한다. 또한 특정 시기의 사건과 사람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는 추모활동은 일회적이 아닌 지속성과 주기성을 가지며 일정한 공간과 장소성을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테면 사회적 추모의 공간적 구현은 통상 합동묘역, 추모공간, 역사교육/기념관(memorial) 등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사회적 추모는 특별하고 가치 있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현재의 기억을 포함하기에 곧 역사를 기록하는 행위가 되며,³²⁾ 추모의 대상은 과거에서 찾지만 그것을 선택하고 형성하는 동기는 항상 현재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추모는 재난을 야기한 과거의 공동체에 대한 현재 공동체 성원들의 사회 성찰의 과정이기도 하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이나 4·3 사건과 같이 국가권력에 의한 조직적인

31)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추모”,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2019. 4. 16. 접속).

32) Schwartz, Barry, “The Social Context of Commemoration: A Study in Collective Memory”, *Social forces* 61(2), 1982, p.377.

진실의 부인(denial)이 개입하는 경우 추모활동은 진실규명과 사법적 해결 이후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진실규명과 법적 배상, 명예 회복의 노력과 나선형적으로 결합되어 함께 나타나고 거꾸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추동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 점에서 추모는 사건의 진실과 희생자의 죽음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확보해가는 사회적 인정투쟁의 중요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³³⁾

추모활동에 내재한 이 같은 복합적 차원을 아우르기에 ‘유족의 상(喪)의 과정’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상의 과정에서 사회적 참사의 유족들은 죽은 사람이 남긴 유지(遺志)의 실체를 상징하고 계승하는 사회적 활동을 통해 고인(故人)의 생명을 영속 시키는 동시에 아픔을 승화시키는 ‘유지(遺志)의 사회화’ 과정을 경유한다. 그리고 죽은 자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유족과 사회의 상호작용은 기존 사회관계를 재(再)구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³⁴⁾

보다 범위를 좁혀 증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남긴 과거의 유산을 청산해가는 이행기 정의 과정에서 추모가 지닌 사회적 의미를 다시 세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피해자의 권리이자 상징적 배상, 회복과 치유의 과정, 기억의 연대를 통한 사회형성의 과정이 그것이다. 각각은 필자가 다른 지면을 통해 거칠게 제시한 인권과 연대에 입각한 관계적 치유, 진실을 알 권리에 입각한 설명적 치유, ‘사회 없는 치유’를 넘어 ‘사회 없는 사회’에서 ‘사회’를 만드는 사회적 치유의 방법론과 결합될 수 있다고 보인다.³⁵⁾

33) 김명희, 「거창·산청·함양 사건 유족운동의 전개과정: 유족의 상(喪)의 과정과 감정동학」, 『일감법학』 42,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34) 김명희, 2015; 앞의 글; 노다 마사야키(野田正彰), 『떠나보내는 길 위에서: 대형 참사 유족의 슬픔에 대한 기록』, 서혜영 옮김, 펜타그램, 2015; 마나베 유코(眞鍋祐子), 『열사의 탄생: 한국민중운동에서의 한의 역학』, 김정남 옮김, 민속원, 2015.

35) 김명희, 2015, 앞의 논문 참조.

3.2 피해자의 권리로서의 추모

우리 시대에 발화된 사회적 추모의 문법을 헤아리기 위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극복 과정에서 ‘추모’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support)이기 이전에 피해자의 권리(human rights)라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추모는 부정의한 사건을 목격한 시민들의 잊지 않겠다는 의지와 도덕적 자각의 발로이지만, 일정한 법사실적 근거 또한 갖고 있다.

2015년 1월 제정된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세월호 피해지원법’) 제36조, 37조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는 맥락에서 추모와 위령 사업을 국가 차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제4장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에 따르면, ‘국가 등은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해’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3. 추모건립비 건립, 4.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할 수 있다.³⁶⁾ 또한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추모사업의 실행을 위해 추모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⁷⁾ 현재 안산 화랑유원지에 건립 추진되고 있는 4·16생명안전공원 또한 이와 같은 추모의 법적 근거에 의해 동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 세월호 2주기를 앞두고 제정된 ‘세월호 피해지원법’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당시 쟁점이던 세월호 인양과 특별법 시행령 개정 요구를 덮기 위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즉 ‘세월호 피해지원법’은 진실규명 없는 피해구제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사고-보상 프레임’ 혹은 진실과 처벌보다는 보상과 지원에 보다 초점을 둔

36) 국가법령정보센터,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3115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681&efYd=20180614#0000>(2019. 8.15 접속)

37) 국가법령정보센터,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970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3834&efYd=20180614#0000>(2019. 8.15 접속).

회복적 정의 모델에 가까운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역설적으로 ‘세월호 피해지원법’이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제도화한 ‘4·16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세월호 진상규명법’)의 규범적 효력과 조응할 때 세월호 추모의 규범적 지향과 효과는 대단히 창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별도의 지면을 필요로 하지만, 각 특별법이 조응하며 만들어내는 새로운 유형의 정의 모델이 – 아마도 회복적 정의와 배상적·응보적 정의가 결합된 – 추모사업을 동력으로 세월호 진실규명의 국면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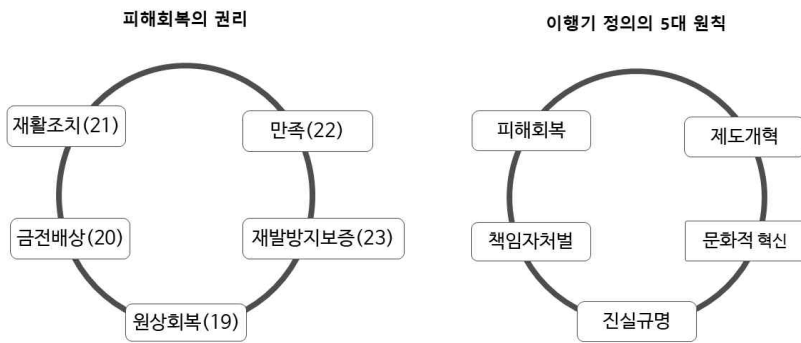
실제 역사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극복 과정에서 과거의 고통을 시인하는 가장 오래된 방법은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것이다. 동상을 세우고, 거리와 광장에 사람들 이름을 붙이고, 추모시와 기도문을 짓고, 철야집회와 행진을 하는 것이다. 독재정권에서 민주정권으로의 이행, 잊힌 소수집단의 자력화, 과거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 등의 이유로 최근 추모 기념물과 의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전세계적으로 인권침해 희생자를 추모하는 작업은 부인하는 세력과 시인하라는 세력이 치열하게 경합하는 기억전쟁의 영토가 되고 있다.³⁹⁾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공적 장소들의 새로운 명명, 박물관 건립, 기념행사, 공식사과 및 속죄, 장소의 재현정과 같은 ‘상징적 배상(symbolic reparation)’은 추모가 지닌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⁴⁰⁾

38) 물론 이 국면을 열어낸 배경에는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에서 정부가 진행하는 배·보상 절차를 거부했던 유가족들의 노력이 자리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39) 코언(S. Cohen),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왜 국가와 사회는 인권침해를 부인하는가』, 조효제 옮김, 창비, 2009, 476~478쪽.

40) 역사적으로 배상에서 상징적·소통적·의례적 전환의 힘은 언제나 강력했다. 이 점에서 상징적 배상 행위로서 추모에 대한 연구는 법적 배상을 넘어 이행기 정의와 인권에 대

구체적으로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국제규범을 살펴보면, 추모 활동이 곧 인권침해 피해자의 만족과 재발방지를 보증함으로써 배상적 정의를 구현하는 활동이라는 점이 보다 분명해진다. 2005년 제출된 반보넬-바시오우니 원칙(일명 인권침해 ‘피해자 권리장전’)은 지원/시혜라는 차원에서 벗어나 인권의 관점에서 참사의 피해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피해자나 유족의 권리로 그치지 않고, 사회, 국민, 국가의 권리이자 의무로 확장된다. 피해자 권리장전은 크게 1. 정의에 대한 권리(right to justice 제8장), 2. 피해회복에 대한 권리(right to reparation 제9장), 3. 진실에 대한 권리(right to know 제10장)⁴¹⁾로 구성되어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제2장, 제3장)를 조문화하고 있다. 각각은 긴밀한 상호 호응 관계를 맺고 있는 바, 추모사업은 각 권리를 실현할 중요한 방편이다.



한 학문을 발전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Brown, Kris, “Commemoration as Symbolic Reparation: New Narratives or Spaces of Conflict?”, *Human Rights Review* 14(3), 2013, pp.274~275.

41) ‘피해자 권리장전’에 따르면, ‘진실에 대한 권리’는 모든 수준의 교육 자료에 자행된 위 반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진실에 대한 권리를 진실을 기억할 사회의 책무로 전환한다(제22조 8항). 이재승, 『‘피해자 권리장전’에 비추어 본 거창사 건, 『일감법학』 42,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92쪽.

특히 ‘피해회복’은 이행기 정의의 5대 원칙 중 하나이며, 위의 그림에서 보듯 ‘피해회복을 위한 권리’를 실현할 수단에는 ① 원상회복 ② 금전배상 ③ 재활조치 ④ 만족 ⑤ 재발방지 보증이 있다. 그 중에서도 ‘만족(제22조)과 ‘재발방지의 보증’(제23조)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를테면 ‘만족(satisfaction)’은 개인의 존엄과 명예회복과 관련되며, 그 구체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⁴²⁾

- (a) 지속적인 침해의 중단을 겨냥한 효과적인 조치
- (b) 사실의 검증과 진실의 완전한 공개
- (c) 실종자의 소재, 납치된 아동들의 신원, 피살자의 시신의 수색, 시신의 발견, 신원확인,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희망과 가족들의 문화적 관례에 따른 시신의 매장에서 지원
- (d) 피해자 및 친척들의 존엄, 명예, 권리를 회복시키는 공식적인 선언 또는 사법적 결정
- (e) 사실의 인정과 책임의 수용을 포함한 공식적 사과
- (f) 위반행위에 책임 있는 개인들에 대한 사법적 행정적 제재
- (g) 피해자에 대한 기념과 헌사
- (h)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연수와 모든 수준의 교육자료 안에 자행된 위반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의 포함

위 항목 중 (g)피해자에 대한 기념과 헌사와 (h)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자료를 통한 설명은 피해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하다. 왜

42) Bassiouni, Cherif,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Victim's Rights”, *Human rights Law Review* 6(2),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p.203~279. satisfaction은 라틴어 satisfactio에서 유래한다. 채권자(피해자)의 만족 이라고 했을 때 이는 완전한 피해회복(full reparation)에 가깝다. satis는 ‘넉넉함’ 또는 ‘보증인’, ‘보증’과 관련된다. satisfactio는 만족, 충족, 만족감, 변제보증, 담보제공, 진사, 사과, 사죄, 배상, 보상, 속죄, 보속(補贖)을 의미한다. 이재승, 「사죄의 수행상 오류」, 『민주법학』 5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5, 104쪽.

나하면 추모(기념) 사업은 공동체의 왜곡된 정보에 대한 인지적 재평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권 침해 피해자를 향한 부정적 정서를 수정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기반을, 나아가 재발 방지를 보증하는 사회적 기반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³⁾

3.3 회복과 치유 과정으로서의 추모

이는 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역량 회복을 통해 치유의 프로세스를 촉진한다. 외상 사건은 대인 관계에 손상을 입히므로, 피해자의 사회세계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외상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즉 관계의 단절/고립과 힘의 상실이 외상 경험의 본질이라고 할 때, 회복은 곧 손상된 사회관계와 삶에 대한 통제력을 복원하는 과정이다. 바꾸어 말해 힘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과 다시 연결되는 것은 회복에서 가장 핵심적인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주디스 허먼(J. Herma)에 따르면 회복은 세 단계를 거쳐 완결된다. 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생존자는 안전을 확립한다. ②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억하고 애도한다. ③ 세 번째 단계에서는 파괴된 인간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일상과 다시 연결되어 간다. 성공적인 회복의 과정은 점진적인 동시에 나선

43) 보다 엄밀히 말해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자체가 여러 차원을 지닌다. 1) 공감이나 애정, 친밀감을 표현하는 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 2) 금전이나 물질적 지원을 포함하는 실질적 지지(tangible support), 3) 관련된 상황이나 사건을 보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informational support), 4) 공동체 차원에서 재난의 피해자가 소속감을 잃지 않도록 돕는 사회교류적 지지(companionship support) 등이 그것이다. 김서경, 『재난 시대의 혐오』, 김명희·김왕배 편,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 그린비, 2016, 291쪽. 세월호 참사가 발생 국면에서부터 사건성이 부인(denial) 당했던 사건임을 인정한다면 세월호 참사 직후 피해자(생존자 및 유가족)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사회적 지지는 정보적 지지였다고 할 수 있다. 거꾸로 정보적 지지의 취약성은 피해자들의 회복을 지원할 사회교류적 지지의 기반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추모관 건립을 포함한 추모사업은 거짓 없는 정보의 소통을 통해 피해자의 사회적 지지 기반을 다시 확장할 수 있다.

형의 경로를 따른다. 이 과정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서 의지할 만한 안전으로, 해리된 외상에서 승인된 기억으로, 그리고 낙인찍힌 고립에서 사회적 연결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⁴⁴⁾ 그리고 외상을 경험한 사람과 공동체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일은 외상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특정 형태의 공동체 활동에 의존한다.

이 점에서 개인적 치유와 사회적 치유는 따로 있지 않다. 우선 참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고통을 야기한 사회적 환경에 대한 통제와 변화 없이 가능하지 않다. 나아가 역량의 회복과 관계 회복의 과정에서 기억과 애도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애도를 통해 피해자는 회복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수용하고 다른 피해자와 연결되면서 사회적인 연결을 완수한다. 즉 애도는 상실을 부인하는 대신 그것을 끌어안고 현재의 삶에서 새롭게 적응해가고자 하는 대응(coping)이다. 비애가 상실에 대한 반응이라면 애도(mourning)는 상실에 대한 대처다. 애도는 사별당한 사람이 상실과 슬픔을 끌어안으면서 삶을 건강하게 이어가고자 하는 노력과 애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고인의 죽음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죽음과 관련한 사회적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장례/추모의례는 사회적 트라우마의 첫 치유과정이기도 하다. 요컨대 애도의 첫걸음은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공유하고 인정하는 것이다.⁴⁵⁾

따라서 피해자가 공동체와 관계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고통이 완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적인 장이 필요하다. 공적 애도 공간으로서 추모관(기념관) 사업은 어긋난 기억을 소통시켜 진실과 기억의 연대에 입각한 사회 성찰을 촉구하고 인권 침해 피해자의 훼손된 명예와 존엄

44) 허먼(J. Herman), 『트라우마: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최현정 옮김, 플래닛, 2007, 127, 260~261쪽.

45) 김왕배, 같은 책, 217쪽.

을 회복하는 사회적 치유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 속 추모 공간은 참사 피해자들의 사회 복귀와 일상 속 치유 과정을 촉진할 뿐 아니라 다른 사회 구성원과 피해자를 연결하여 공통의 기억을 생성함으로써 공동체의 (재)통합에 기여할 통로를 제공한다. 보다 장기적인 견지에서 무엇보다 희생자들의 추모는 집단적 기억을 망각에서 구해내고, 수정주의와 역사 부정 논리가 발흥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추모(기념)관이 유통시키는 진실을 코언의 분류를 따라 다음 네 차원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① 사실적·법실체적 진실, ② 개인적·서사적 진실, ③ 사회적 진실, ④ 치유적·회복적 진실이 그것이다. ① 사실적·법실체적 진실은 사실에 근거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불편부당한 절차를 통해 획득한 법적·과학적 정보를 말한다. 전사회적 차원에서 이것은 인권침해의 맥락·원인·유형의 기록을 뜻한다. ② 개인적·서사적 진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더 철저히 밝힌 진상을 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진실의 소통은 증언의 치유적 잠재력을 실현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의 주관적 경험을 확증함으로써 화해를 추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③ 사회적 진실은 사람들 간의 의견교환, 논의, 토론을 통해 구현된 진실을 말한다. ④ 치유적·회복적 진실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를 직시하는 서사 방식을 말한다. 사실의 기록만으로 총체적 진실에 다가가기에 충분치 않다. 자기치유, 화해, 배상이라는 목표를 위해 우리는 진실을 해석해야한 하고 그러려면 우선 모든 피해자가 실제로 고통 받았으며, 그것이 주목받을 가치가 있다는 점을 시인해야 한다.⁴⁶⁾ 그런 점에서 진실위원회의 활동은 사건에 대한 사회적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며, 개인적 진실을 포함한 총체적인 진실의 사회적 (재)해석과 소통은 ‘설명 없는 치료’를 넘어 설명의 힘이 촉발하는 ‘설명적 치유(explanatory healing)’의 가능성을 확대한다.

46) 코언(S. Cohen), 같은 책, 467~468쪽.

3.4 기억의 연대와 사회형성 기제로서의 추모

궁극적으로 사회적 추모를 통한 진실의 소통과 전송은 공통의 기억을 형성함으로써 사회형성의 과정을 촉진한다. 기억을 공적이고 사회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기념이다. 기념은 개별적 기억이 사회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을 강화한다. 기념일을 통해 동일한 그 날의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집단 구성원들이 하는 전형적인 활동이다. 기념일은 “기억의 동시화”를 통해 집단적 기억을 생성한다.⁴⁷⁾ 이러한 집단 기억은 사회 성원들의 감정적이고 지적인 연대감의 원천이 된다.

동시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의례 과정은 희생자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고 더 이상 부정의한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남은 자들의 책임과 약속을 다지는 사회 결속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은 연대감과 함께 사회생성적인 가치를 산출한다. 이 지점에서 뒤르케임의 『종교생활의 기본형태』(1912)는 추모에 대한 풍부한 사회학적 성찰의 자원을 제공하면서 추모 의례가 감정적 결속과 사회형성에서 지닌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이에 따르면 의례는 개인과 사회의 유대를 강화하고 도덕적 회복에 기여한다. 예컨대 기념의례는 여전히 과거에 충실함을 보여주는 재현 의례들로, 개인을 집단에 연결해주는 관념과 감정을 일깨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념의례는 현재를 과거에 그리고 개인을 집단에 복속시킴으로써 집합의식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들을 소생시키며, 이러한 의례를 통해 집단은 주기적으로 자신의 통일성에 대한 감정을 새롭게 한다.⁴⁸⁾

47) 올릭(J. K. Olick), 『국가와 기억: 국민국가적 관점에서 본 집단기억의 연속·갈등·변화』, 최호근·민유기·윤영휘 옮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365~366쪽.

48) 뒤르케임(E. Durkheim),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노치준·민혜숙 옮김, 민영사, 1992, 513~520쪽. 뒤르케임은 의례를 소극적 의례와 적극적 의례로 구분한다. 소극적 의례는 신자들에게 어떤 행위를 명령하는 대신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터부의 형태를 띠며, 성과 속 사이의 부당한 혼합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적극적 의례는 신자들이 종교적 힘 또는 신과 적극적으로 상호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는 의례로서, 희생의례, 모

또한 속죄의례는 재난에 대처하여 그것을 애도하거나 기억하기 위해 거행하는 의례이다. 뒤르케임에 따르면 속죄의례는 ‘슬픔의 축제’로 종교생활의 매우 특수한 국면을 제시해준다. 속죄의례의 전형적인 형태인 장례식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흥분상태를 만드는 집단적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속죄의례에 내재한 사회정화와 사회생성적 힘이다.

장례식의 근거는 집단이 그 구성원 중 하나를 잃었을 때 느끼는 상실감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느낌이 개인을 서로서로 접근시키고 좀 더 긴밀한 관계를 갖게 하며 동일한 심적 상태에서 그들을 결속시키는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 원래의 상실을 보상해주는 위안감이 나온다. 그들은 함께 울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매이게 되고 집단은 그들에게 가해진 타격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물론 사람들은 슬픈 감정만을 공동으로 느끼는 것 같다. 그러나 슬픔 속에서의 의사소통 역시 하나의 의사소통인 것만은 사실이다. 모든 정신적인 교제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건 간에 사회의 생명력을 높여 준다.⁴⁹⁾

동시에 이 같은 감정적 결속의 과정은 새로운 가치와 믿음이 발현되는 사회변형의 과정이다. 주기적인 위기가 불러일으키는 감정들은 그 위기에 적합하게 대처하기 위해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을 모이도록 해준다. 그러나 그들이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서로 간에 위안을 얻게 된다. 그들이 함께 치유법을 찾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공통된 믿음은 이와 같이 재구성된 집단 안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다시 활기를 띠게 된다.

방의례, 기념의례, 속죄의례의 네 유형으로 구성된다. 뒤르케임에 따르면 모든 적극적인 의례는 신뢰, 희열 더 나아가 열광상태에서 이루어진다.

49) 뒤르케임(E. Durkheim), 같은 책, 552~553쪽.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사회의 도덕적 통합과 응집을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그 믿음은 다시 태어난다.⁵⁰⁾

이러한 에너지의 증가는 처음에 느껴졌던 파괴의 결과를 더욱 완벽하게 지워버린다. 집단은 힘이 점차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느낀다. 집단은 다시 희망을 가지고 살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애도하기를 마친다. 결국 슬퍼하는 행위 그 자체 때문에 슬픔에서 벗어나는 것이다.⁵¹⁾

어떻게 이렇게 될까? 랜달 콜린스(R. Collins)는 의례를 통해 생성되는 두 가지 상호 강화 기제를 예리하게 지적한다. 첫째가 기호와 상징의 소통을 통한 ‘행위와 인식의 공유’라면 둘째는 ‘공유 정서’다. 공동으로 하는 움직임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서로 같은 행동과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집합적 관심은 공유하는 정서의 표출을 강화하고 공유 정서는 집합적 활동과 상호 주관성의 감각적 농도를 더 짙게 만든다. 집합 행동은 상호주관성이 창조되고 있다는 신호다.⁵²⁾

상징은 의례 참여에서 생기는 감정이 상징에 실릴 때에만 존중된다. 집단이 한자리에 모이고 그들의 정서를 구현하는 대상에 관심을 집중될 때면 언제나 ‘새로운 성스러운 대상’이 탄생한다. 이렇듯 의례에 참여하면서 생성되는 특정한 종류의 정서적 에너지를 뒤르케임은 ‘도덕감정(moral sentiment)’이라고 부른다. 도덕감정이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인지를 구분하는 감정이다.⁵³⁾ 이 같은 도덕감정의 발현은 슬픔의 사회적 승화 과정을 설명하는 바, 이를테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을 ‘별

50) 그런 점에서 승배의 진정한 존재이유는 걸치레가 아니라 내적이고 도덕적인 갱신에서 찾아야 한다. 뒤르케임(E. Durkheim), 같은 책, 481~482쪽.

51) 뒤르케임(E. Durkheim), 같은 책, 553쪽.

52) 콜린스(R. Collins), 『사회적 삶의 에너지: 상호작용 의례의 사슬』, 진수미 옮김, 한울아카데미, 2009, 71~72쪽.

53) 콜린스(R. Collins), 위의 책, 162쪽.

이 된 아이들'이라 부르고 '노란 리본'에 투영하는 존엄과 성스러움의 감정은 내면에 작용하는 도덕적 압력을 느낄 때 경험하는 정서이자 가치다. 1천 회가 넘는 풀뿌리 토론과 슬픔의 공유에 기초해 만들어진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이나 각 지역의 문화제 형식과 결합된 축제형 촛불 시위는 추모라는 감정적이고 의례적인 실천을 통해 생명·안전·인권·정의라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사회변형의 과정을 드러내 보여준다.

누군가가 말하듯, 치유의 출발점이 통곡을 야기한 골짜기인 '사회'에 대한 성찰이며 치유의 궁극적인 지향점 또한 '사회' 만들기에 있다고 할 때⁵⁴⁾ 뒤르케임의 종교사회학은 사회적 치유의 방법론과 사회이론의 구성에 매우 핵심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무엇이 사회를 하나로 결속시키는가? 사회적 의례의 기제라는 것이 그의 답이다. 더 나아가 뒤르케임은 사회적 의례는 사회 결속의 강도를 변화시키는 기제라 말한다. 의례의 효과가 사람들의 마음에 생생하게 남아있고 그들의 정서에 반향을 일으키는 동안, 사회는 하나로 결합된다. 그렇게 결속된 '사회'는 사회체계라는 추상적인 통일체가 아니라 의례 참여의 효과와 의례에서 충전된 상징을 통해 형성된 유대를 느끼는 사람들이 특정한 장소에 집결한 집단 안에 존재하는 실체라고 할 수 있다.⁵⁵⁾

4. 결론 및 제언

이 글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정치문화의 중심부로 들어온 추모 현상을 치료요법적 문법에서 탈피해 사회이론의 성찰 및 사회적 치유의 방법론

54) 정명중, 「인문과 치유, 그 접합을 위한 제언」, 『인간연구』 18,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0, 131쪽.

55) 콜린스(R. Collins), 같은 책, 78~79쪽.

과 접목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였다. 이를 통해 이 글은 세월호 참사가 촉발한 사회적 반성의 형식으로서 추모 현상을 재조명하고, 추모라는 집합적 실천의 양식이 재난의 감정사회학은 물론 정치/사회 변동을 다루는 사회이론의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요컨대 우리시대의 추모에 대한 사회학적 탐구는 기존의 사회이론에서 미답의 영역으로 다루어져왔던 추모현상을 ‘사회 없는 사회’에서 ‘사회’를 만드는 사회형성과 역학의 기제로 고찰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에 대한 보다 정치한 설명과 구체적인 사례 연구는 다음의 과제로 남기며, 이상의 논의로부터 보다 활력적이고 민주적인 추모 문화의 정립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간략히 도출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에게 추모사업은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이자, 공적 애도의 공간에서 희생자의 죽음이 지닌 사회적 의미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얻고 진실의 부인과 왜곡으로 손상된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지원이나 시혜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는 관점에서 추모가 지닌 사회적 의미를 사유한다면, 향후 세월호 추모사업 전반의 과정에서 유족의 능동적 참여는 높은 수용성을 가져올 것이다. 즉 유족들의 주체적 참여는 피해자의 권리인 동시에 성공적 추모사업을 위한 기본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공간적 접근성은 지속 가능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활력적 추모 사업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 점에서 추모의 장소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일상적 삶이 펼쳐지는 지역이어야 하며, 일상 속의 추모 공간 건립은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훼손된 사회관계를 복원하는 공동체 기반 치유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는 비단 피해자들의 회복만이 아니라 참사로 분열된 지역공동체의 소통과 통합을 촉진하는 유력한 방편이기도 하다.

셋째, 또한 추모의 방식에 있어서도 추상적이고 획일적인 기념의 방식에

서 벗어나 희생자들 개개인의 내러티브를 복원하고 시민참여의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창의적인 추모 형식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독일의 ‘걸림돌 프로젝트’는 일상의 한복판에서 나치희생자를 기리고 새로운 풀뿌리 추모문화의 선례가 되고 있는 바, 추상적인 희생자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구체적인 희생자에 대한 기념과 추모는 성장세대로 하여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희생자들의 개별운명에 직면하게 함으로써 나치범죄를 구체적으로 반성하고 시민의 책임을 성찰할 살아있는 인권교육의 장을 제공한다.⁵⁶⁾

무엇보다 사회적 추모사업은 사회적 기록과 기념을 통해 기억/진실의 소통과 사회 성찰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반복해서 등장할 수 있는 ‘4.16부인(denial)’(‘4.16 거짓말’)이나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로부터 재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예방책이 될 수 있다. 인권 침해는 단지 마음상태에 그치지 않는 제도적 관행이며, 안전사회로의 이행은 결코 일회적인 제도 정비로 종결되지 않는 ‘이행의 이행(transition of transition)’의 과정이다. 잊혀진 희생자와 연결의 끈을 놓지 않는 추모/기념 문화의 조성은 재발 방지를 보증하는 가장 확실한 장치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시민 참여를 다각도로 보장하는 추모 문화의 창조적인 정립 과정은 더 나은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투고일 : 2019. 9. 1. 심사기간 : 2019. 9. 5 ~ 16. 게재확정일 : 2019. 9. 17.

56) 이흥경, 「독일의 홀로코스트 추모문화의 새로운 흐름: ‘걸림돌 프로젝트’ 연구」, 『독어독문학』 146, 한국독어독문학회, 2018, 129~147쪽.

| 참고문헌 |

<연구논저>

416세월호참사작가기록단, 『재난을 묻다: 반복된 참사 꺼내온 기억, 대한민국 재난연대기』, 서해문집, 2017.

UCIG704-SER000000506.2015.19..001

_____, 『그날이 우리의 창을 두드렸다: 세월호의 시간을 건너는 가족들의 육성기록』, 창비, 2019.

김명희, 「세월호 이후의 치유: 제프리 알렉산더의 ‘외상 과정’ 논의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19, 한국문화사회학회, 2015, 11~53쪽.

UCIG704-SER000000506.2015.19..001

_____, 「한국 이행기 정의의 감정동학에 대한 사례연구 : 웹툰 <26년>을 통해 본 5·18 부인(denial)의 감정생태계」, 『기억과 전망』 3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6, 55~101쪽.

UCIG704-SER000002793.2016..34.003

_____, 『통합적 인간과학의 가능성: 맑스와 뒤르케임의 실재론적 귀환』, 한울아카데미, 2017.

_____, 「거창·산청·함양 사건 유족운동의 전개과정: 유족의 상(喪)의 과정과 감정동학」, 『일감법학』 42,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3~47쪽.

김명희·김왕배 편,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 그린비, 2016.

김민수·오경환, 「감정과 정동 사이: 감정의 역사화를 위한 방법론적 시론」, 『역사와 경계』 111, 부산경남사학회, 2019, 1~28쪽.

김서경, 「재난 시대의 혐오」, 김명희·김왕배 편,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 그린비, 2016, 288~309쪽.

김왕배, 『감정과 사회: 감정의 렌즈를 통해 본 한국사회』, 한울아카데미, 2019.

김종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본 헌법학의 과제」, 『저스티스』 146(3), 한국법학원, 2015, 208~318쪽.

UCIG704-001304.2015.146.3.010

노다 마사야키(野田正彰), 『떠나보내는 길 위에서: 대형 참사 유족의 슬픔에 대

- 한 기록』, 서혜영 옮김, 펜타그램, 2015.
- 누스바움(M. C. Nussbaum), 『감정의 격동1: 인정과 욕망』, 조형준 옮김, 새물결, 2015.
- 뒤르케임(E. Durkheim),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노치준 옮김, 민영사, 1992.
- 럽턴(D. Lupton), 『감정적 자아: 나의 감정은 사회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박형신 옮김, 한올아카데미, 2016.
- 레디(W. M. Reddy), 『감정의 향배: 감정 이론, 감정사, 프랑스 혁명』, 김학이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16.
- 마나베 유코(眞鍋祐子), 『열사의 탄생: 한국민중운동에서의 한의 역학』, 김정남 옮김, 민속원, 2015.
- 문희정·주혜선·이수상·안현의, 「집단 트라우마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상실 이후의 추모 반응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13(11),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7, 27~45쪽.
- 스피노자(B. Spinoza), 『에티카』, 강영계 옮김, 서광사, 1990.
- 유혜정, 「재난정치와 애도: 남영호, 상품백화점, 세월호 참사의 마주함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 올릭(J. K. Olick), 『국가와 기억: 국민국가적 관점에서 본 집단기억의 연속·갈등·변화』, 최호근·민유기·윤영휘 옮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 이재승, 「사죄의 수행상 오류」, 『민주법학』 5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5, 99~142쪽.
- UCIG704-000183.2015.0.59.003
- _____, 「인권의 시각에서 본 세월호 사건」, 김명희·김왕배 편,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 그린비, 2016, 333~360쪽.
- _____, 「‘피해자 권리장전’에 비추어 본 거창사건」, 『일감법학』 42,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71~108쪽.
- 이호영,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박근혜 정부의 방해」, 『민주법학』 63,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2017, 205~245쪽.
- UCIG704-000183.2017..63.009
- 이홍경, 「독일의 홀로코스트 추모문화의 새로운 흐름: ‘걸림돌 프로젝트’ 연구」,

- 『독어독문학』 146, 한국독어독문학회, 2018, 129~147쪽.
- 전남대학교 감성인문학연구단, 『공감장이란 무엇인가: 감성인문학 서론』, 길, 2017.
- 정명중, 「인문과 치유, 그 접합을 위한 제언」, 『인간연구』 18,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0, 99~137쪽.
- UCIG704-001738.2010..18.003
- 코언(S. Cohen),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왜 국가와 사회는 인권침해를 부인하는가』, 조효제 옮김, 창비, 2009.
- 콜리어(A. Collier), 『비관적 실재론: 로이 바스카의 과학철학』, 이기홍·최대용 옮김, 후마니타스, 2010.
- 콜린스(R. Collins), 『사회적 삶의 에너지: 상호작용 의례의 사슬』, 진수미 옮김, 한울아카데미, 2009.
- 푸레디(F. Furedi), 『치료요법문화』, 박형신·박형진 옮김, 한울아카데미, 2016.
- 한효정·김민·남상인, 「세월호 참사 추모활동 대학생의 의도적 반주, 자기노출, 추모활동이 간접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6), 한국청소년학회, 2017, 179~204쪽.
- 허먼(J. Herman), 『트라우마: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최현정 옮김, 플래닛, 2007.
- 황필규, 「재난과 피해자 인권」, 2019년 제1회 사회적 참사 피해지원 포럼 자료집,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19, 9~24쪽.
- Bassiouni, Cherif,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Victim's Rights", *Human rights Law Review* 6(2),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p.203~279.
- Brown, Kris, "Commemoration as Symbolic Reparation: New Narratives or Spaces of Conflict?", *Human Rights Review* 14(3), 2013, pp.273~289.
- Evenden, Martin, "Critical Realism in the Personal Domain: Spinoza and Explanatory Critique of the Emotions", *Journal of Critical Realism* 11(2), 2012, pp.163~187.
- Linenthal, Edward. T., *The Unfinished Bombing: Oklaboma City in American Mem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Schwartz, Barry, “The Social Context of Commemoration: A Study in Collective Memory”, *Social forces* 61(2), 1982, pp.374~402.

Stroebe, Margaret, “From Mourning and Melancholia to Bereavement and Biography: An Assessment of Walter’s New Model of Grief.” *Mortality* 2(3), 1997, pp.255~262.

<언론자료 및 인터넷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3115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681&efYd=20180614#0000>(2019. 8.15 접속).

국가법령정보센터,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970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3834&efYd=20180614#0000>(2019. 8.15 접속).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추모”,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2019. 4. 16. 접속).

김수정, 「‘생일’, 100만 돌파... 4월 개봉작 중 유일」, 노컷뉴스, 2019. 4. 22. <https://www.nocutnews.co.kr/news/5138522>

정양지, 「인천시의회, 세월호참사 추모 조례안 마련」, 인천투데이, 2019. 8.14.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044>

Emotional Politics of Disaster and Sociology of Commemoration

- For Social healing beyond the Medicalization of Emotions -

Kim, Myung-hee

This article tries to combine the methodology of social healing with the theoretical reflections on the social commemoration phenomena that has emerged as an important part of Korean political culture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in 2014. This study points to the limits of the disaster politics which exploits communal mourning as an opportunity for the medicalization, and then explores an alternative explanation of the social commemoration phenomena. Recent social theories that recognize the cognitive, evaluative, and social character of emotions provide theoretical resources for reflecting on the social commemoration phenomena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Based on these theories, this study reveals the sociological meaning of the social commemoration phenomena in three dimensions. First, the commemoration of social disaster is a right and a symbolic compensation for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Second, the commemoration of a social disaster is a healing process that restores social relations through memory, mourning, and the communication of the truth. Third, the commemoration of a social disaster can be a practical method of social healing by reflecting on the historical causes of the disaster, and can be a means of both creating new social values and solidarity.

Keywords : emotional politics of disaster, medicalization of emotions, socialization of emotions, social healing, sociology of commemoration